

의안번호	제 368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6월 일 (제281회)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발 의 자	최광옥의원의 7명
발의연월일	2009년 6월 일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36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9년 6월 일
 발 의 자 : 최광옥, 이영복, 강태원
 권광택, 김법기, 이규완, 이필용, 최미애

1. 제안이유

- 의회 회의운영 및 의사 결정을 신속히 처리하고, 도민에게 자치입법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하며, 조문의 체계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의원등록을 임기초에 하게 된 것을 당선인 결정 후에 하도록함(안 제2조)
-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가 법정직무대리이므로 의장지정의 문구를 삭제함(안 제10조)
- 의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을 하되, 의원자격심사, 법령에서 정한 사항, 사회안녕질서유지 등은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 조약)
-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사항 신설(안제21조)
- 의원이나 위원회 발의 조례안 중 도민의 권리제한, 의무부과 사항의 입법예고로 도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 부여 신설(안 제22조의2)
- 의회에서 이송된 조례를 도지사가 공포 즉시 의회에 알리도록함(안 제32조)
- 결산심사 결과 위법, 부당한 사항이 있을때 의회에서 해당기관에 징계요구는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징계요구 문구 삭제(안 제72조)
-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심사 종료기한 및 연장기간 명시(제90조)
-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조문의 체계와 자구를 일제정비(안 제1조부터 제94조까지)

3. 일부개정규칙안 : 별첨

4.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71조에 따라"로, "충청북도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를 "충청북도의회"로, "규정함으로써"를 "정하여"로, "운용"을 "운영"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등록) 충청북도의회의원(이하 "의원" 이라 한다)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충청북도의회사무처(이하 "의회사무처"라 한다)에 제시하고 의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이를 정한다"를 "정한다"로, "않을 때에는"을 "아니하면"으로 한다.

제4조 "의회"를 "충청북도의회(이하 "의회" 라 한다)"로, "임시회에 있어서는"을 "임시회에서는"으로 한다.

제7조제5항 중 "본회의 또는"을 "본회의나"로, "의장 또는"을 "의장과"로 , 같은 조 제6항 중 "하되"를 "하되,"로 한다.

제8조 제목 중 "의장·"을 "의장과"로, 같은 조 제1항 중 "선거하되"를 "선거하되,"로, 같은 조 제2항 중 "없을 때에는"을 "없으면"으로, "하고"를 "하고,"로, "때에는"을 "경우"로, "1인"을 "1명"으로, "2인"을 "2명" 으로, "차점자에 대하여"를 "차점자를"으로, "최고득표자에 대하여"를 "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", "결선투표를 함으로써"를 "결선투표 하여"로 한다.

제9조 제목 중 "의장·"을 "의장과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경우의"를 "경우에"로 한다.

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

2년이 되는 날 까지로 한다. 다만,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될 때에는 그 의장이나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

제10조 본문 중 “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”를 “부의장이”로 한다.

제11조 본문 중 “의장·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.”를 “제8조에 의한다.”로 한다.

제12조 제목 중 “의장·”을 “의장과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이를 정하여야 한다.”를 “정하여야 한다.”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날로부터”를 “날 부터”로, 같은 조 제4항 중 “부의된”을 “부쳐진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의결 또는”을 “의결이나”로, “때”를 “때에도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개의·정회·산회 및 유회는 본회의는”를 “개의, 정회, 산회, 유회를 본회의에서는”으로, “위원회 회의는”을 “위원회에서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장 또는”을 “의장이나”로, “제1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4조에 따른”으로, “못한 때는”을 “못하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장 또는”을 “의장이나”로, “산회 및”을 “산회·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 또는”을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”로, “있을 때에는”을 “있으면”으로, “재개한다”를 “재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회의의 공개) ① 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의원 3명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, 의원의 자격심사, 법령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, 그 밖에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(신설)

②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여야 한다.(신설)

제17조제1항 중 “개의일시·부의안건과 그 순서를”을 “개의일시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순서를”로, “때는”을 “때에는”로, “아니한다”를 “아니하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통지하고”를 “알리고”로 한다.

제18조 본문 중 “때에는”을 “때에는,”으로, “하며”를 “하며,”로 한다.

제19조 본문 중 “그 일정을 정한다”를 “그 일정을 정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20조 제목 중 “제출·”을 “제출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도지사·교육감·위원회 또는”을 “도지사, 교육감, 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예산 또는”을 “예산이나”로, “의안의”를 “의안을”으로, “ 경우에는”을 “경우에”로 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 의장은 의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,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. 다만,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.(신설)

1. 의장, 임시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장의 선거
2. 의장, 부의장의 불신임 건
3. 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장의 사임 동의의 건
4.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
5. 상임위원회,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
6.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
7.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
8.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
9. 회기 결정의 건
10. 재의요구의 건
11.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

12.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

13.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의 건

-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
- ④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그 관련 위원회에도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 회부하여야 한다.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.
- ⑤ 의장이 제4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면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⑥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5항의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안건에 대하여는”을 “**안건은**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입법예고) ① 의장은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 중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나 주요 내용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신설)

- 1.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
- 2.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
- 3.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
- 4. 입법내용의 성질,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관련조례를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정부담 수반, 규제강화 여부 등에 대한 충청북도 관련부서의 의견과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,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.

④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의회 홈페이지나 충청북도 도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- ⑤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입법에 반영 할 것
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,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- ⑥ 그 밖에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부의할”을 “부칠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위원회서”를 “위원회에서”로 한다.

제25조 제목 “동의”를 “**동의의 의제성립**”으로, 같은 조 본문 중 “1인”을 “**1명**”으로 한다

제26조제2항 중 “심사보고”를 “**본회의에 심사보고**”로, 같은 조 제4항 중 “**하며**”를 “**하며,**”로 한다.

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7조(의안과 동의의 철회)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,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각각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하려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에 관하여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안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.(신설)

제28조 중 “도지사 또는”을 “**도지사나**”로, “**없으며**”를 “**없으며,**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질의·토론”을 “질의와 토론”으로, “안건에 대하여는”을 “안건은”으로, “하고”를 “하며,”로, “토론 전부 또는 그 중의”를 “토론의 전부나 그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지사 또는”을 “도지사과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”을 “관계공무원이”로 한다.

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1조(의안의 정리)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을 후 그 내용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, 문구, 숫자,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하면,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32조(의안의 이송) ① 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이를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의회로 부터 이송된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(신설)

제33조제1항 중 “발언하려고 할 때에는”을 “발언을 하려면”으로, “통지하여”를 “알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”을 “발언을 알리지 않은”으로, “통지를 한”을 “알린”으로, “다음”을 “다음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”를 “미리 의장에게 알려야”로, “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”을, “사안이라고 인정되면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하되”를 “하되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필요한 때에는”을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면”으로 한다.

제35조 중 “아니하며”를 “아니하며,”로, “산회 또는”을 “산회하거나”로, “계속하게 한다.”를 “계속하게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의사진행 또는”을 “의사진행이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”로 한다.

제37조 중 “2회에 한하여”를 “2회까지”로, “위원장·발의자”를 “위원장이나 발의자”로 한다.

제37조의2 제1항 중 “안에서”를 “내에서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한하며”를 “한정하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정하며”를 “정하며,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발언을”을 “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를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의사진행발언 및”을 “의사진행발언·”으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장이”를 “의장이나 위원장이”로 한다.

제39조 중 “위원장 또는”을 “위원장이나”로 한다

제40조제1항 중 “반대 또는”을 “반대나”로, “통지하여야”를 “알려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지를”을 “알림을”으로, “발언하게 하되”를 “발언하게 하되,”로 한다

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1조(의장의 토론 참가)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 의원석에서 하여야 하며,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앉을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.

제42조 제목 중 “질의 또는”을 “질의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질의 또는”을 “질의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, “종결을”을 “종결에”로 한다.

제43조제1항 중 “제목을 선포”를 “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”로 한다.

제44조 중 “회의장”을 “본회의장”으로, “투표에 의하여”를 “투표로”로 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기립 또는”을 “기립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의 또는”을 “제의나”로, “기명 또는”을 “기명이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이의”를 “다른 의견”으로, “이의가”를 각각 “다른 의견이”로, “제1항 또는”을 “제1항이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2항 중 “약간인”을 “약간명”으로, “계산하게 한다”를 “계산하게 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아니할 때에는”을 “아니하면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 중 “수개”를 “여러 개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제3호 중 “수개”를 “여러개”로 한다.

제49조 중 “의장은 그 결과”를 “의장은 의장석에서 그 결과”로 한다.

제50조제1항 제4호 중 “성명 및”를 “성명과”로, 제7호 중 “제반”을 “모든”으로, 제9호 중 “부의”를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, 제14호 중 “기타 본회의 또는”을 “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이나”로 한다.

제5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.

같은 조 종전의 “③”항은 “④”항으로 하고 종전의 제3항 중 “작성·”을 “작성이나”로 한다.

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1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 회의록에는 의장이나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,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사무처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. 다만,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하거나 날인한다.

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2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,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 임시회의록이 의정시스템에 게재한 날 부터 7일 이내 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.

1. 법조문이나 숫자 및 고유명사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
2.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
3.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
4.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

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,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”를 “의장은 비밀이 요구되거나”로, “발언자 또는”을 “발언자나”로, “배부 및”을 “배부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단서에 따라”로, “열람·복사”를 “열람이나 복사”로, “신청할”을 “신청한”으로,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“열람하게 하거나 전재·복사”를 “열람이나 전재(轉載) 또는 복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결 또는”을 “의결이나”로, “판단되는”을 “판단될”으로, “배부 및”을 “배부하거나”로 한다.

제56조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57조제1항 중 “조례안 기타”를 “조례안이나 그 밖의”로, “사무에 대하여는”을 “사무는”으로, “대안 등은”을 “대안 등을”으로 한다.

제58조제1항 중 “듣고”를 “하고,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도지사 또는”을 각각 “도지사나”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우나”를 “경우와”로, “설명의 충실을 위하여”를 “충실한 설명을 위하여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.”를 “대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59조제1항 중 “회수 및”을 “회수나”로 한다.

제60조 제목 “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”를 “다른 위원회 의원의 발언 청취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위원 아닌”을 “소속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”로 한다.

제61조제2항 중 “가부동수일 때에는”을 “찬성과 반대가 같으면”으로 한다.

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2조(연석회의) ① 의안이 2개 이상의 위원회 소관직무와 관련이 있으면, 그 안건을 회부받은 소관 위원회는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른 위원회와

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.

② 소관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전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

③ 연석회의는 안전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장이 주재하며, 위원장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63조제1항 중 “안전 또는”을 “**안전이나**”로, “이해관계자 또는”을 “**이해관계자나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**그 밖의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정하며”를 “**정하며,**”로 한다.

제64조제1항 중 “심사경과와 기타”를 “**심사경과와 결과, 그 밖에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.”를 “**그 시행에 긴급이 요구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**”로 한다.

제65조제2항 중 “보고 또는”을 “**보고나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가할 수”를 “**덧 붙일 수**”로 한다.

제66조제1항제1호 중 “개의·회의중지와”를 “**개의와 회의중지 및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0호 중 “부의할”을 “**부칠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제11호 중 “기타 위원회 또는”을 “**그 밖에 위원회나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 또는”을 “**위원장이나**”로, “서명·”을 “**서명이나**”로 한다.

제67조 중 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”를 “**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 자료에 대하여**”로, “심사·”를 “**심사나**”로, “없는 한”을 “**없으면**”으로 한다.

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7조의2(준용규정) 제16조의2, 제33조, 제35조, 제36조제2항, 제41조에서 제43조까지와 제46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준용하되, 의장을 위원장으로,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.

제68조제1항 중 “도지사 또는”을 “**도지사**와”로, “시정연설 또는”을 “**시정연설과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첨부하여 이를”를 “**첨부하여**”로, “회부하고”

를 “회부하고,”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의한다.”를 “부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있으며”를 “있으며,”로 한다.

제70조제1항 중 “부의할 수”를 “부칠 수”로 한다.

제71조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, “정하여”를 “정한 후”로 한다.

제72조제2항 중 “종합심사케”를 “종합심사하게”로, “부의하도록”을 “부치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도지사, 교육감”을 각각 “도지사나 교육감”으로, “변상 및 징계조치 등”을 “변상 등”으로 한다.

제72조의2 중 “기금운용 계획안 및”을 “기금운용계획안과”로, “제68조 내지 제72조의”를 “제68조에서 제72조까지의”로 한다.

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3조(도지사 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, 출석요구를 받은 도지사가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가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.(신설)

제73조의2 제2항 중 “하고”를 “하고,”로, “송부하여야 하며”를 “송부하여야 하며,”로, “도지사 또는”을 각각 “도지사와의”로 한다

제74조제1항 중 “도지사 또는”을 각각 “도지사와의”로, “제출하여야 하며”를 “제출하여야 하며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지사 또는”을 “도지사나”로, “날로 부터”를 “날 부터”로, “통지하여야”를 “알려야”로 한다.

제75조 중 “도지사,”를 “**도지사나**”로, “의장 또는”을 “**의장이나**”로 한다.

제76조제1항 중 “서명”을 “**서명하거나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 전까지”를 “**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**”로 한다.

제77조 제목 중 “회부 및”을 “**회부와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79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**제79조에 따라**”로, “회부하고”를 “**회부하고,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”를 “**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**”로 한다.

제78조제3항 중 “부의하여야”를 “**부쳐야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결을 한 때는 의장은”을 “**의결을 한 때에는 의장이**”로 한다.

제79조제1항 중 “경유하여”를 “**거쳐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변명하거나 또는”을 “**변명하거나**”로 한다.

제80조제1항 중 “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”를 “**관할 경찰관서에**”로, “있으며”를 “**있으며,**”로, “급히”를 “**긴급히**”로 한다.

제81조 중 “본회의 또는”을 “**본회의나**”로 하고, 같은 조 1호 중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”를 “**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기관,**”으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**그 밖의**”로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의장 또는”을 “**의장이나**”로, “아니한”을 “**아니하고**”로, “인쇄물 배포 및”을 “**인쇄물을 배포하거나**”로, “촬영행위”를 “**촬영하는 행위**”로, 같은 조 제4호 중 “각연”을 “**흡연**”으로, 같은 조 제6호 중 “통화 또는 통신”를 “**통화·통신**”으로 하고,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**그 밖에**”로 한다.

제82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**그 밖의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본회의 또는”을 “**본회의나**”로, “비공개키로”를 “**비공개 하기로**”로, “의원 및 기타”를 “**의원과 그 밖의**”로 한다.

제85조제2항 중 “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”를 “**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**

라 단체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표나”으로 하고, 같은 조 3항 중 “관서”를 “기관”으로, “교부하며”를 “교부하며,”로 “회기를 통하여”를 “회기 중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주소·성명·직업 및 연령”을 “주소, 성명, 직업, 연령”으로, “소정의”를 “정해진”으로 한다.

제86조제1항 중 “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흥기 또는”을 “흥기나”로, 제2호 중 “주기가”를 “술기운이”로, 제3호 중 “정신에”를 “정신”으로, 제5호 중 “의장 또는”을 “의장이나”로, “휴대 또는”을 “휴대하거나”로,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문란케”를 “문란하게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, 제3항 중 “의장 또는”을 “의장이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찰관 또는”을 “경찰관이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87조제1항 중 “다음과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통화 또는 통신을 하거나 통신기기를 작동케”를 “통화나 통신을 ”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“깍연”을 “흡연”으로, 같은 항 제5호 중 “신문 기타”를 “신문이나 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의장 또는”을 “의장이나”로, 같은 항 제8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장 또는”을 “의장이나”로 한다.

제88조 제목 중 “녹음·”을 “녹음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, “(한한다)”를 “(한정한다)”로, “녹음·녹화·촬영 및 중계”를 “녹음, 녹화, 촬영, 중계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중 “매회기초에”를 “매 회기 초에”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녹음·녹화·촬영”을 “녹음, 녹화, 촬영”으로 한다.

제89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83조의 규정에”를 “제83조에”로, “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 하며”를 “모욕을 당한 의원이 모욕을 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이 요구되지 아니하며,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부의할”을 “부칠”로 한다.

제90조제1항 중 “제4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항에 따른”으로, “받은 날 또는 동조”를, “받은 날, 같은 조”로, “날로부터 폐회 또는”을 “날 부터 폐회나”로, “동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”를 “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9조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같은 조 제3항에 따른”으로, “날로부터”를 “날 부터”로 한다.

제9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89조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징계가 회부된 날 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, 본회의 의결을 얻어 3월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(신설)

제92조 제목 중 “심문 및”을 “심문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중 “경유하여”를 “거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한 본회의 또는”을 “관하여 본회의나”로, “의장 또는”을 “의장이나”로, “허가를 받아”를 “허가가 있으면”으로 한다.

제9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3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 중 일때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로 한다.(단서 신설)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